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6. . . |
| 발 의 자 | 김근한 의원 외 1인 |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: 2026. . .
발 의 자: 김근한·김민성 의원(2인)
찬 성 자: 김낙관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
소진혁·이상호·이지연·추은희
허민근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, 위기청소년·청소년부모·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라. 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마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3)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 제6조

나.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 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복지”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

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
5. “청소년부모”란 부 또는 모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,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.

6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
7. “고립·은둔 청소년”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.

8. “퇴소청소년”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,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운영,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소년우대)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·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
2.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
3.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, 학생증,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1조의2를 따른다.

제5조(청소년의 건강보장) 시장은 구미시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
2.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
3. 청소년의 체력·건강 기준에 따른 검사·진단 사업
4.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
5.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
6.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·음주·마약 예방 관련 사업
7.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청소년복지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
2.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
3. 그 밖에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구미교육지원청, 구미경찰서,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위기청소년 지원사업)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
2.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
3.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지원
4.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청소년부모 지원사업)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
2.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,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
3.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4. 법 제18조의6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
5.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
2.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

3.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
4. 자립 및 자활 지원
5.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
6.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
7.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사업) ① 시장은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·교육·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주거지원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우

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2조(권리보장)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시장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3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종전의 다른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다른 조례인 「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
5의2. “고립·은둔 청소년”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.

6. (생략)
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의2(고립·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교육,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3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4. 그 밖에 고립·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16조의3(위기청소년 학교 복귀·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, 생활 지원, 의료 지원, 주

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,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·재산 정도, 취업상태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

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) ① 청소년쉼터

(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
2.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

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

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
2.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
3.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
4.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
5.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
6.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
7. 청소년시설의 확보 방안
8.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: 교육청소년과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 례 명 |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8조3, 제31조, 제32조의2 |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○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○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○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○ 위기청소년·청소년부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○ 가정 밖 청소년·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○ 주거지원, 권리보장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 |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「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」를 통폐합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의 종합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○ 위기청소년, 청소년부모, 가정 밖 청소년, 고립·은둔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|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청소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여건 조성 및 건전한 성장 지원에 기여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 | |

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10조제3항: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·교육·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
·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·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,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재정의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

4. 작성자

-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김관수(☎054-480-2723)